

의안번호	제 60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12월 9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08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9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매우 유사한 중대재해로 사고가 난지 12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관리는 소홀하였음
-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한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함
- 근본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함
- 이에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 불 임 : 건의안

보낼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 정당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4월말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고는 지난 2008년 1월 초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사고와 매우 유사한 중대재해로 사고가 난지 12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관리는 소홀하였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 필요함에도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한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은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현재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이미 2007년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1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